산업통상자원부 | 보도참고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1. 9.(화) 배포즉시 배포 2024. 1. 9.(화)

12월 임시국회,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 입법 불발에 대한 정부 입장

□ ’23.9.7.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**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**이 ’24.1.9. **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음**

□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**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** 및 취약분야의 **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**를 위해 **최선의 노력**을 다해 왔음

○ 먼저, 법 시행을 앞두고 **중대재해 예방체계**를 갖추고자 **적극 노력**했음에도 불구, 취약분야 중심으로 **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**하였으며,

○ 83.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**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**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「**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**(’23.12.27.)」을 **마련·발표**함

○ **중기중앙회, 경총, 대한상의,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**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**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**하였음

□ 이러한 정부,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,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.7만 **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**하는 것임

○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**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**지며, 중대재해로 **대표 처벌시 폐업** 뿐만 아니라 **일자리 축소**로 인한 **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**하며 **적용유예를 호소**하고 있음

○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전면시행(1.27.) 전까지 **적극적인 개정안 논의** 및 **신속한 입법 처리**를 간곡히 요청드림

□ 정부도 1월중 **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·운영**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**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** 및 **이행**을 **적극 뒷받침**하겠음

○ 사업주·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**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**하고 **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**해나가겠음

<기획재정부>	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	책임자	과 장 박성궐 (044-215-8550)
		담당자	사무관 송상목 (044-215-8551)
			사무관 변유호 (044-215-8554)
<고용노동부>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	책임자	과 장 김태연 (044-202-8950)
		담당자	서기관 서규진 (044-202-8951)
			사무관 정치환 (044-202-8952)
<중소벤처기업부>	중소기업정책관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동원 (044-204-7440)
		담당자	서기관 문종원 (044-204-7442)
			주무관 류희열 (044-204-7446)
<산업통상자원부>	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	책임자	과 장 이용훈 (044-203-4220)
		담당자	사무관 김지은 (044-203-4226)
<국토교통부>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 이상옥 (044-201-4937)
		담당자	사무관 전 진 (044-201-3574)
			주무관 박성준 (044-201-3575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